



미국 산림법 주요내용¹⁾

정보신청기관 : 산림청 규제개혁담당관실

I.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입법골자

국유림 내 도로, 철도 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제

1. 주요관련조문

제1조 [도로와 철도 시스템; 정책에 대한 미국의회의 인식과 그 천명]

미 의회는, 목재나 여가 등 토지사용에 대한 요청이 증대되는 경우 국유림(내지 미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 내에 있거나 그 부근에 있는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그와 같은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도로에 부수한 목재

나 다른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점, 그와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이들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제2조 [도로통행권에 대한 지역권의 허가; 농림부장관의 권한; 규정]

농림부장관은 영속적이거나 일시적인 지역권(easements)을 허가해줄 권한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것이거나 항구적인 것이며, 혹은 이는 국유림 토지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도로통행권(road rights-of-way) 및 농림부가 허가권을 갖는 다른 관련 토지에 대한 도로통행권에 대한 것이다.

제3조 [지역권 만료와 그 취소; 통지; 청문]

지역권은 지역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용되거나



1) <http://www.fs.fed.us/publications/laws/selected-laws.pdf>

나,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한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한다면 지역권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권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권자의 권리를 취소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결정에 앞서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제4조 [산림개발도로 등]

농림부 장관은 국유림(내지 미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 내에 있거나 인접한 산림개발도로를 개발하거나 인수하거나 유지할 권한이 있다(이하 생략).²⁾

제6조 [도로이용자에 의한 유지와 복구 등]

농림부 장관은 정부의 목재나 다른 자원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로이용자들도 미 산림청의 통제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개별적 이용조건에 부응하는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각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지수준이란 것은 총사용에 비례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이용에 적합하려면 복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농림부 장관은 도로이용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의 주요내용

본 법은, 토지사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때

문에 국유림이나 미국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 인근의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의회가 인식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본 법은 위와 같은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도로 인근에 있는 목재 등의 자원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더불어 관리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 상급 주무관청인 농림부 장관이 이들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호,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입법배경이 되어 제정된 것이다.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국유림 토지나 미국 산림청 관리토지에 대한 도로통행권 등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지역권(easements)을 허가해줄 권한이 있으며, 반대로 허가해준 지역권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림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 ② 농림부 장관은 국유림이나 미국 산림청 관리토지 부근의 산림개발도로를 개발하거나 유지할 권한도 있다. ③ 도로를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목재 등 정부 자원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미국 산림청의 통제에 따르도록 농림부 장관이 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가령 그 일환으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림부 장관은 도로이용자에게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2) 산림개발도로에 대한 예산문제 등 기술적 규정이므로, 국유림관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여 이하 내용은 생략한 것이다.

II. Volunteers in the National Forests Act of 1972

■ 입법골자

자원봉사자에 의한 국유림의 관리

1. 주요관련조문

제1조 [국유림계획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농림부장관은 공무원분류법이나 규칙 혹은 예규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보수 개인용역제공자를 통역기능, 방문자서비스, 보존방안, 개발 등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로 채용하거나 훈련시키거나 받아들일 권한이 있다. 이 법을 이행해 나감에 있어, 농림부장관은 국가및지역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가 제공하는 유능한 자원봉사자 추천을 참고해야만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의 부대비용]

농림부장관은 교통비, 의복비, 숙박비, 생계비 등 자원봉사자의 부대비용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제3조 [자원봉사자의 고용상 지위]

(a) 연방 피고용자로서의 지위

이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자원봉사자는 연방 피고용자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연방고용관련법의 규정에 구속되지도 않는데, 근무시간, 휴가, 실직급여, 연방 피고용자로서의 혜택 등도 이에 포함된다.

(b)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

제28장인 불법행위쟁송규정의 목적상으로는, 이 법의 자원봉사자는 연방 피고용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c) 공적 피고용자(공무원)

제5장 제81절 제1목의 규정 목적상 업무로 인한 공상에 대한 배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는 제5장의 제8101조에서 정의된 바 “피고용자”라는 용어의 의미 내에서는 미국의 공적 피고용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d) 손실과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자원봉사에 부수해서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에 관련한 쟁송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는 연방 피고용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법의 주요내용

본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부장관은 이른바 국가및지역사회봉사단의 추천을 받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거나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통역, 보존활동, 개발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교통비, 의복비, 숙박비, 생계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지위는 본 법 목적상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연방고용관련법에서 정한 연방 피고용자라는 보지 않는다는 점, 다만 불법행위에 관한 쟁송과 관련해서는

본 법의 자원봉사자는 연방 피고용자로 간주된다는 점, 업무로 인한 공상에 대한 배상이 문제될 때에는 공적인 피고용자로 본다는 점, 자원봉사에 부수해 생긴 자원봉사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쟁송이 문제될 때에는 연방 피고용자로 본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III. National Forest Foundation Act

■ 입법골자

비영리재단을 통한 효율적 국유림 관리

1. 주요관련조문

제402조 [재단의 설립과 목적]

- (a) 설립
워싱턴 D.C.에 주소를 둔 비영리자선단체로서 “국유림재단”을 설립한다.
- (b) 목적
국유림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농림부 소속 산림청의 활동을 위해 혹은 그 활동과 관련해, 개인기부금 및 부동산증여와 사유재산기부를 장려하고 이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것
 - ② 국유림기구(National Forest System)의 하부조직이 설립되도록 하는 활동이나, 인가된 산림계획에 부합하는 활동 등을 착수하

거나 진행해 나가는 것

- ③ 교육적이거나 기술적 조력을 해주거나 장려하며, 산림연구 등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프로그램 등을 착수하거나 장려하는 것

제403조 [재단이사회]

(a) 설립과 구성

국유림재단은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이사회는 미국시민 자격이 있는 1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농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인원수는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릴 수 있다. 이사회 구성시에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다수³⁾가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의 관리, 법, 연구 등에 학문적 경험이 있거나 실무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이사는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미 산림청 청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지만 발언권만 있을 뿐 투표권은 없다.

(b) 임명 및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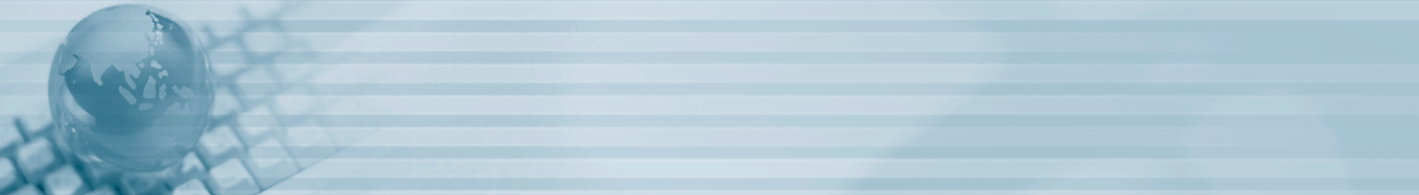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농림부장관에 의해 이사회의 이사로 임명되며, 임명기한은 6년이다.

(c)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들 중에서 호선되어야 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이사로의 임기 내에 있는 한 연임될 수 있다.



3) “A majority of members of Board”



(d) 정족수

사업활동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한 투표권 있는 이사들의 다수⁴⁾로 한다.

(e) 회의

이사회는 의장의 요청에 의해 1년에 1번은 소집되어야 한다.

(f) 비용보상

이사회에의 투표권 있는 이사는 무보수로 일하지만,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수비용이나 사실상 필요한 여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g) 일반적 권한

이사회는 재단의 목적과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착수함으로써 재단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d) 임원과 직원

(이하 생략)

제404조 [조직의 권한과 의무]

(a) 개요

국유림재단은,

① 영속성을 가져야 하며, ② 여러 주나, 지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③ 워싱턴 D.C. 도시지역에 주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④ (생략).

(b) 통지 및 절차적 서비스⁵⁾

(c) 인장(印章)⁵⁾



4) "A majority of current voting membership of the Board"

5) 국유림 관리규정 리서치 관점에서 중요치 않아 생략.

(d) 권한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유림재단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증여 등을 받아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권한,
- ② 기부를 받고, 부동산 등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권한, ③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자산을 임대하거나 팔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식으로 처분할 권한, ④ 돈을 빌리거나 채권 등을 발행할 권한, ⑤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권한, ⑥ 재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 ⑦ 재단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e) 자산

(생략)⁵⁾

제406조 [자원봉사자]

농림부장관은 공무분류법이나 규칙 혹은 예규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Volunteers in the National Forests Act가 정한 자원봉사자를 이어나, 임원, 직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08조 [미국정부의 책임면제]

미국은 재단의 채무 등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재단채무를 위해 미국의 신용이나 신뢰를 공여해서도 안 된다.

제409조 [국유림재단과 미국 산림청의 활동]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국유림

재단의 활동은 미국 산림청의 권한과 활동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며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야만 한다.

2. 법의 주요내용

본 법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주소를 둔 비영리자선단체로서 “국유림재단”이 설립되는데, 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부 소속 산림청의 활동을 위해 혹은 그 활동과 관련해, 개인기부금 및 부동산증여와 사유재산기부를 장려하고 이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것, ② 국유림기구(National Forest System)의 하부조직이 설립되도록 하는 활동이나, 인가된 산림계획에 부합하는 활동 등을 착수하거나 진행해 나가는 것, ③ 교육적이거나 기술적 조력을 해주거나 장려하며, 산림연구 등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프로그램 등을 착수하거나 장려하는 것.

위 재단에는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재단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미국시민 자격이 있는 1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다수⁶⁾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의 관리, 법, 연구 등에 학문적 경험이 있거나 실무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이사는 무보수로 일하지만,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비용이나 사실상 필요한 여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국유림재단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증여 등을 받아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권한, ② 기부를 받고, 부동산 등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권한, ③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자산을 임대하거나 팔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식으로 처분할 권한, ④ 돈을 빌리거나 채권 등을 발행할 권한, ⑤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권한, ⑥ 재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 ⑦ 재단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국유림재단의 채무 등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재단채무를 위해 미국의 신용이나 신뢰를 공여해서도 안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유림재단의 활동은 미국 산림청의 권한과 활동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며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법에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양 인 준

(외국법제조사원, 김&장 법률사무소 연구원)



6) majority